



**제 600호 2024. 3. 14 (목)**

**입법예고**

제2024-1265호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7590

**고 시**

제2024-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7607  
 제2024-94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37618  
 제2024-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 37622  
 지내 · 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행도면 고시

**공 고**

제2024-1218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37629  
 제2024-1275호 공인조례 등록 공고 ..... 37630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회원증 하나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규정
  - 나.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김해시민에서 경남도민으로 확대
  - 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특별대출서비스 시행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김해통합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특별대출서비스 용어 정의
  - 나. 회원의 종류(안 제3조)
    -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 다. 개인회원 도서대출 권수 확대(안 제8조)
    - 7권 → 10권
  - 라. 비치 희망자료 신청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
    - 도서관별 월 3권 이내 신청
  - 마. 이용료 반환 규정 및 취소신청서 신설(안 제15조)
    - 부대시설 이용 및 평생학습강좌 수강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청구 취소신청서 작성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장유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51004)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장유도서관
    - 2) 담당부서: 장유도서관(열람팀)(전화: 055-330-7464, FAX: 055-722-1690, E-Mail: kyj657@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개정이유

- 회원증 하나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규정
-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김해시민에서 경남도민으로 확대
-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특별대출서비스 시행

##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김해통합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특별대출서비스 용어 정의
- 회원의 종류(안 제3조)
  -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 개인회원 도서대출 권수 확대(안 제8조)
  - 7권 → 10권
- 비치 희망자료 신청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
  - 도서관별 월 3권 이내 신청
- 이용료 반환 규정 및 취소신청서 신설(안 제15조)
  - 부대시설 이용 및 평생학습강좌 수강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청구 취소신청서 작성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7조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2024. 3. 14. ~ 4.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조례·규칙심의회: 2024. 5.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통합도서관”이란 김해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김해시와 협약한 사립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행정자료실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특별대출서비스”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회원의 종류)** 도서관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일반, 청소년, 어린이
2. 단체회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관 및 단체
3. 특별회원: 특별대출서비스 이용자

**제4조(회원가입 절차 등)**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은 도서관에 설치된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독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한 가입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도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신분증 및 재직(재학) 증명서
3. 도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4. 도 소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증명서류 또는 협약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회원인 가족 구성원은 가족ID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⑤ 다른 지역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회원정보 반입을 통해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5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탈퇴 시 대출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지정된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탈퇴를 한 경우 도서관은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회원탈퇴를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회원탈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도서관 회원이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회원가입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료실 이용)** ① 자료실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실 컴퓨터 이용 시 게임, 도박, 해킹,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때는 본인의 독서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족ID를 등록한 회원은 본인의 독서회원증을 제시한 후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 개인회원의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으로 한다.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경우에는 각 도서관에서 10권씩 총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예약자가 없는 자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일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협약에 따른다.

⑥ 특별회원의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특별대출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다.

⑦ 대출자료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타관대출 및 반납)** ① 회원은 김해통합도서관 소장자료(비도서 자료는 제외한다)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다.

② 타관대출 권수는 전체 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③ 자료제공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타관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기한 내 대출하지 않은 타관대출 신청자료가 3권을 초과하였을 때는 30일간 타관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운 자료

3. 신문 및 당월호 잡지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희망자료 신청)** ① 회원은 비치 희망자료를 도서관별 월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희망자료 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

1. 소장·구입·정리 중인 자료, 품질·절판 자료

2.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자료(단, 컴퓨터, 과학, 재테크, 신학문 분야는 2년)

3. 5만 원 이상의 고가 자료, 전집

4.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POD 도서(주문형 출판도서)

5. 수험서, 문제집, 참고서, 대학교재, 특정 분야 전문서적 등

6. 판타지소설, 무협소설, 로맨스소설, 인터넷소설, 만화 등(단,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

7. 도서관 장서로 소장이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자료(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자료, 팝업북, 컬러링북, 낱장자료 등)

8. 영리(출판 관련인 신청자료)·정치 목적, 종교 편향적인 자료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자료

9.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2조(기증자료 관리)** ① 관장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이용자가 열람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이 기증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 한정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④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거나 소장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재기증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부대시설 이용)**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생학습강좌 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범위(제13조 관련)

도서관명	이용 가능 시설
장유도서관	공연장
김해울하도서관	-
김해기적의도서관	다목적강당
칠암도서관	공연장, 시청각실
화정글샘도서관	-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 다목적홀, 시청각실

#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가족ID 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휴대전화		집 전 화	
주 소	자 택		
	직장·학교	*경남도민이 아닌 경우 작성	

본인은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확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 < 참고사항 >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도 소재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분께 회원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 독서회원증은 김해통합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료대출 시에는 본인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출 권수는 최대 10권이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대출자료 분실 또는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ID 등록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회원증을 제시한 후에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필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주소(자택, 직장·학교),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고지사항 전달	<b>회원탈퇴 시까지</b>

※사용 중 생성항목: 대출자번호, 회원구분, 관리구분, 직급, 소속, 책임음 회원여부, SMS 수신여부, 우편발송지역, 상호대차 제한일, 상호대차 복귀횟수, 회원상태, 대출정지일, 대출정지 사유, 등록일자, 회원증 분실여부, 제적일자, 현재 대출책수, 현재 연체책수, 누적 연체횟수, 누적 연체일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국립중앙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b>책이음서비스 이용</b>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b>회원탈퇴 시까지</b>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 위 임 장

① 위임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②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김해통합도서관 회원(□가입 □탈퇴)에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 회원탈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회원번호	
	전화번호			
	주 소			
탈퇴사유				

본인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의 사유로 김해통합도서관 회원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 ○○도서관장 귀하



##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b>신 청 자</b>	성 명 (단체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메 일	<i>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i>
	주 소	<i>고지서 수령 주소</i>		
<b>행 사 명</b>				
<b>행사내용</b>				
<b>참석대상 (인원)</b>				
<b>이용기간</b>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b>이용시설</b>	기본시설			
	부속시설			
<b>변경내용</b> ※변경 시 작성	변경사항			
	변경사유			
<p>「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김해시 ○○도서관장 귀하</p>				
<b>첨부서류</b>	행사계획서			



##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주소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감면사유				
감면금액	(이용료 원의 %)			
<p>「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b>김해시 ○○도서관장 귀하</b></p>				
첨부서류	감면 증명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14일

김 해 시 장

###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김해시 신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상 호 : 지에스건설(주)
- 대표자성명 : 임병용,허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청진동,그랑서울)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위 치 :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 23,747㎡ → 변경 : 23,712㎡
-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건축연면적 : 당초 : 92,790.2898㎡ → 변경 : 92,813.7127㎡
  - 주택평형별 및 규모

사업종류	건물규모	평형	세대수	공 급 면 적 (㎡)			비 고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민간분양 (공동주택)	1~28층 7동	59A	112	77.3921	59.7355	17.6566	
		59B	46	77.8184	59.7288	18.0896	
		78A	24	100.6587	78.5312	22.1275	
		84A	241	108.4764	84.7313	23.7451	
		84B	110	108.3645	84.3186	24.0459	
		84C	52	107.9180	84.5614	23.3566	
		125	2	162.8857	125.1210	37.7647	

○부대건물현황(변경)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당초	변경	
근린생활시설	지하2,1층	1,905.4559	1,905.4490	
경비실	지하1층, 지상1층	30.1124	-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	지하2층	706.9782	-	
주차장	지하2,1층	28,131.3906	28,154.8281	
주민공동시설	지하2,1층	1,471.2716	1,471.2817	
경로당	지상1층	164.1392	-	
어린이집	지상1층	321.6552	-	
작은도서관	지상1층	290.6207	-	
어린이놀이터	2개소	882	911.52	

다. 사업시행기간

2021. 10. 01. ~ 2024. 03. 31.

**2.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붙임1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붙임2

**3. 승인관련서류**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 김해 도시관리계획(장유신문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31	장유신문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	28,120	감) 6	28,114	김해시고시 제2017-228호	

※ 구역계 변경없는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31	장유신문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 면적 변경 기정) 28,120㎡ 변경) 28,114㎡ (감 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li> </ul>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120	감) 6	28,11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670	증) 57	26,727	95.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50	감) 63	1,387	4.9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	김해시 신문동 1206-9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공사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li> </ul>
-	김해시 신문동 1206-9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공사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li> </ul>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도로)(변경)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19	국지 도로	935 (143)	중로1-11	중로1-7	일반 도로	광로 2-1-2	1977.11.9	
변경	중로	2	42	16~22	국지 도로	164 (164)	중로2-1	대로1-3-3	일반 도로		2014.4.24	면적변경

※ 연장의 ( )는 장유신문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2-42	중로2-42	• 면적 변경 기정) 788㎡ 변경) 783㎡ (감 5㎡)	• 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공사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 공간시설(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4	녹지	완충 녹지	무계동 156-8 일원	59,282 (1,442)	감) 63	59,219 (1,379)	1993.2.27	대1-3-1호선 주변 (지역간 간선도로변 녹지)
변경	3-13	녹지	완충 녹지	삼문동 542 일원	4,415.2 (1,429)	증) 97	4,512.2 (1,526)	1999.8.17	대1-3-3호선변 녹지

※ 면적의 ( )는 장유신문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3-4	녹지	• 면적 변경 기정) 1,442㎡ 변경) 1,379㎡ (감 63㎡)	• 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공사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13	녹지	• 면적 변경 기정) 1,429㎡ 변경) 1,526㎡ (증 97㎡)	• 구역경계 지적분할측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공사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	23,747	감 35	23,712	1	김해시 신문동 1188 일원	23,747	감 35	23,712	공동주택용지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륜	• 기준 용적률 : 200% • 허용 용적률 : 250%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제6조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함
		높 이	• 28층 이하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해당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③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 ④ 장래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지침 및 법령이 변경될 시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 ⑤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령 내용에 따른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조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가구 또는 블록”라 함은 도로(보행자도로, 공공통로 제외)에 의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3. “지정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를 갖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정된 용도를 말한다.
  4.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기준을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제2장 부문별 시행지침

### 제4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① 지정용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며, 계획적 기능육성을 위해 지정된 용도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제5조 (용적률, 높이, 건폐율에 관한 사항)

- ① 용적률, 높이, 건폐율은 신문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 시 면적 증감에 따라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건축물의 높이는 획일적인 계획으로 단지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및주요 경관요소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③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높이, 건폐율은 다음에 따른다.

도면표시번호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기준 용적률 : 200% ● 허용 용적률 : 250%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김해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제6조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함
		높 이	● 28층 이하

### 제6조 (건축선의 적용)

- ① 건축선은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확보한다.

### 제7조 (대지내 조경)

- ① 중앙광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는 나무식재외에 포장재,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경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및 외관)

- 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계획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부합되도록 권장한다.

### 제9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와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 건물의 주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중저채도 색채를 권장한다.

### 제10조 (담장의 처리)

- ① 외곽도로에 접하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담장, 식재담장 또는 1.2m이상의 투시형구조를 권장한다.

#### 제11조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 ①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시 환경친화적 방안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 제12조 (보행자 출입구)

-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지로의 보행자 출입구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 (단지내 도로)

- ①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지내 도로중 단지 출입구에서 단지내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구조를 적극 권장한다.

#### 제14조 (주차장 설치)

- ① 단지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② 주차장의 설치방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 제15조 (지침적용의 완화)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실시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 심의를 득하거나 지정권자가 인정할 경우

##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도로시설

#### 제19조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제20조 (동선)

- ① 도로의 동선은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포장재료 및 표지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 및 설치한다.
- ② 보행통로가 주차장,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 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 (횡단보도)

- 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령, 관련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횡단보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횡단보도 중 주거단지의 주출입구와 연결부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곳에는 특수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나 그 전방에는 미리 교통안내표지나 도로표지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야한다.
- ③ 횡단보도구간에는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휠체어와 보행자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22조 (보행안내판)

- ① 주거단지 출입구지점에는 지구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대상지 및 지구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 ③ 보행안내판의 형태, 사용재료, 색상 및 글자체 등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독특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보행안내판은 보도와 차도경계에서 보도쪽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차량소통용 안내판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제23조 옥외가로시설물

- ① 안내판,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 등 가로시설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연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일괄된 주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변화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각각의 가로시설물이 설치될 장소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중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 집분산지점에 가로시설물을 집중배치하여 이용의 편의와 가능한 효용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③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은 통합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 제25조 가로수

-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고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하며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전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제2장 포장

#### 제26조 (재료의 선정기준)

- ① 시공이 용이하고 대량구입이 가능한 재료
-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중차량 이상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④ 질감이 좋고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깨끗한 재료
- ⑤ 보도의 포장은 보행인에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성재료를 권장한다.

#### 제27조 (조성방식)

- ①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③ 보도 이외에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
-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선뿐 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조명시설 및 가로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인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붙임2>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신문동 1169-1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김해시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문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기정

시 설 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중로 2-1	935	21		143	15~19	714.0
중로 2-42	164	22		164	16~22	788.0
완충녹지(3-4)	-	-	59,282.0	-	-	1,442.0
완충녹지(3-13)	-	-	4,415.2	-	-	1,429.0

-변경

시 설 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길이(m)	폭원(m)	면적(m <sup>2</sup> )
중로 2-1	935	21		143	15~19	714.0
중로 2-42	164	22		164	16~22	783.0
완충녹지(3-4)	-	-	59,219.0	-	-	1,379.0
완충녹지(3-13)	-	-	4,512.2	-	-	1,52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지에스건설(주) 대표자: 임병용,허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청진동.그랑서울)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21. 10. 01. ~ 2024.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 별첨참조(토지조서)

7.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사유

- 사업부지 소유자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b>계</b>				<b>36,315</b>	<b>28,114</b>	<b>60 필지</b>				
1	신문동	1169-1	도	257	257	공(김해시)				토지분할
2		1169-7	도	1	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		1169-9	도	1	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		1169-5	도	245	245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토지분할
5		1169-9	도	248	248	김해시(2/5)				
			도	166	16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6		1169-6	도	207	20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토지분할
7		1169-10	도	309	309	공(김해시)				
8		1185	대	683	68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9		1185-1	답	449	44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0		1186	임	152	152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1		1187-2	전	86	8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2		1188	장	9,588	9,58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3		1188-3	장	370	37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4		1198-1	답	31	3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5		1199-1	대	91	9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6		1199-4	답	53	5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7		1201	답	139	13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8		1201-1	답	198	19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19		1201-2	답	13	1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0		1202-2	답	1,200	1,20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1		1202-3	창	1,017	1,01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2		1202-4	답	73	7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3		1202-5	답	278	27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4		1202-6	답	65	65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5		1202-7	답	1,162	1,162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6		1203-3	답	39	3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7		1203-5	답	21	2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8		1204-3	답	297	29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29		1205-2	답	217	21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0		1206-3	답	273	27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1		1206-5	대	115	115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2		1206-8	도	36	3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3		1206-9	답	486	48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4		1207-1	도	67	6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5		1288-1	답	442	442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6		1288-2	구	159	15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7		1288-4	창	620	62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8		1289	구	111	11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39		1292-3	답	2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토지분할
		1292-6	답	118	11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0		1293-3	창	91	9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1		1293-4	대	88	8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2		1375-4	장	14	14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3		1375-5	답	496	49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4		1375-39	답	638	63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5		1398	답	56	5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6		1398-4	대	39	3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7		1404-8	답	277	277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8		산1-1	임	4,088	4,08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49		산1-2	구	943	94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0		산1-6	구	210	21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1		산1-8	임	33	3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2		산5-1	임	8	8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3		산5-2	구	551	55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4		산5-10	임	69	69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55		1191-2	도	26	26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토지분할
56		1191-5	도	68	68	공(김해시)					
57		산6-3	도	30	3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토지분할
58		산6-14	도	98	98	공(김해시)					
59		1188-2	도	8,174		공(김해시)					토지분할
		1188-5	도	108	108	공(김해시)					
60		산6-5	임	100	100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 김해시 고시 제2024 - 94호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김해시 공고 제2018-1440호(2018.4.13.)로 준공인가되고, 김해시 고시 제2018-266호(2018.11.23.)로 변경 승인고시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4년 3. 14.

###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 면 적 : 1,644,010.8㎡
    - 금회 사업(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면적 14,687.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1단계 : 2011년 1월 ~ 2017년 4월 17일
    - 2단계 : 2015년 3월 ~ 2018년 4월 13일
    - 금회 사업기간 : 2024년 3월 (승인시) ~ 2025년 8월(※ 금회 변경사항에 한함)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금회 사업에 한함)
  - 성 명 : 싱싱과일나라(주) 대표이사 이병규(대표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잠실아이스페이스 102호
  - 성 명 : 정중화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47, A동 2702호(우동, 트럼프월드마린)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3.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사항 없음)
- 1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16.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 ①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없음)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④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4) 물류유통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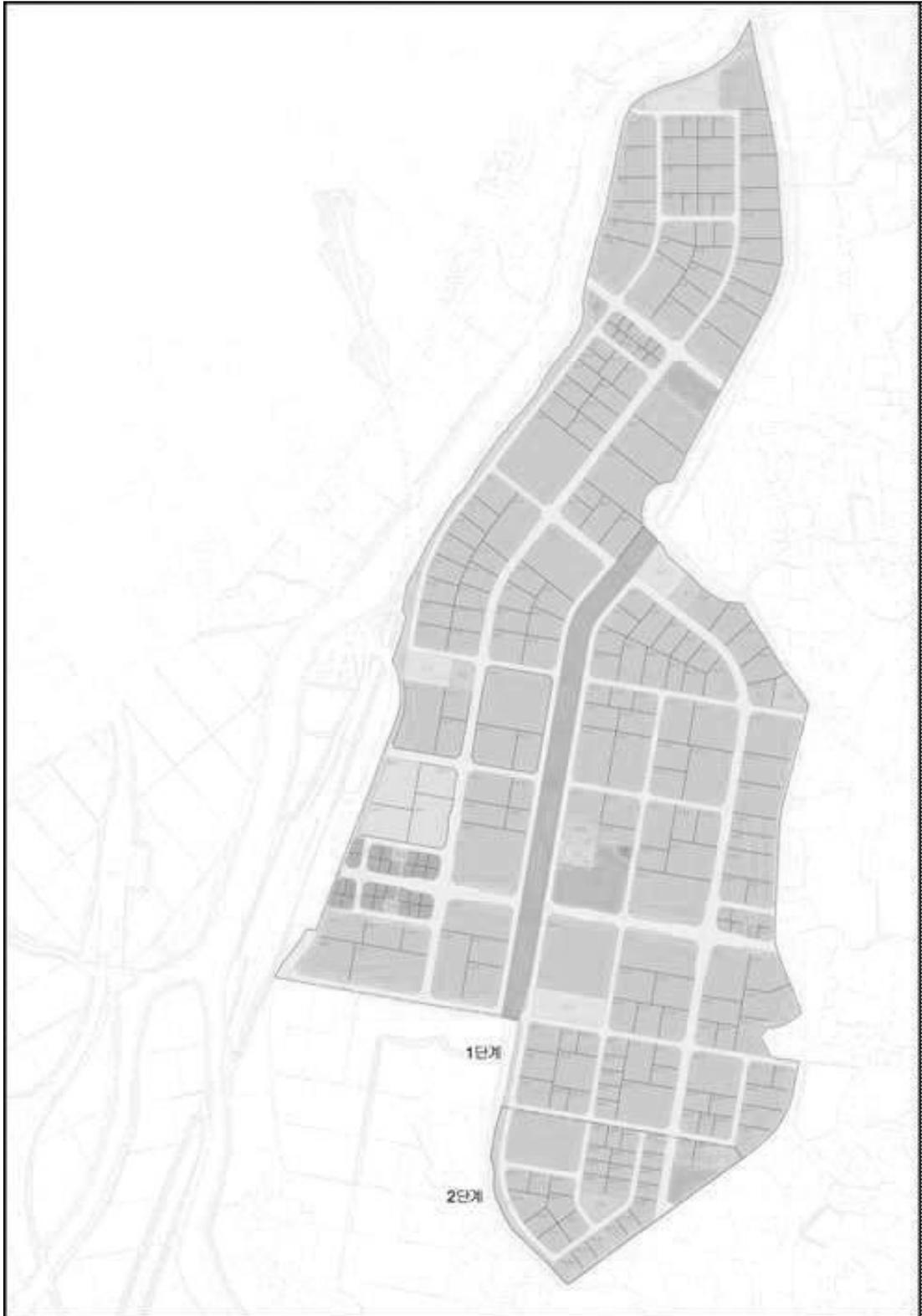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1,821.7	-	31,821.7	-	31,821.7	
D1	D1	31,821.7	D1-1	8,933.5	증)2,627.7	11,561.2	
			D1-2	5,753.7	감)2,627.7	3,126.0	
			D1-3	7,495.3	-	7,495.3	
			D1-4	9,639.2	-	9,639.2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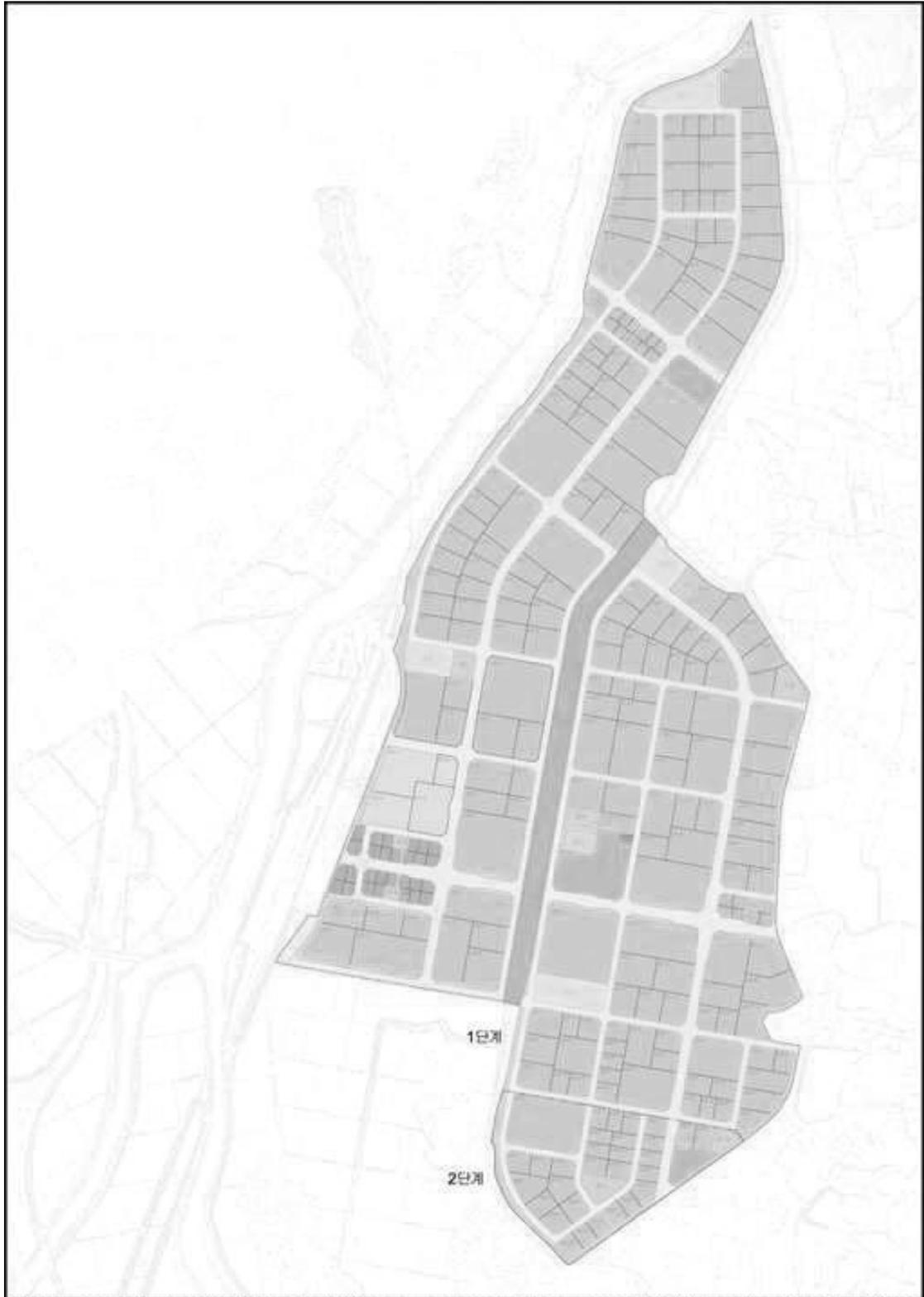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변경없음)

- 18.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사항 없음)
- 19.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20. 피해영향조사서(해당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내·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3. 14.

김 해 시 장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상 호 : 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 외 1
- 대표자성명 : 김의장 외 1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92번길 42, 2층 (삼정동)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 면 적 : 29,736㎡ → 29,781㎡ (증 45㎡)
-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 건축면적 : 4,709.8861㎡
- 건축연면적 : 86,958.0491㎡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 4층~ 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아파트 569세대	79.3931	59.9988	19.3943	201
			79.3632	59.9389	19.4243	73
			110.6569	84.9811	25.6758	181
			111.6161	84.9447	26.6714	114

○ 부대 건물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관리사무소	지하 2층	110.0058	
근로자휴게실	지하 1층	35.3332	
보육시설	지하 1층	265.8683	
돌봄센터	지하 1층	111.0381	
경로당	지하 1층	120.9707	
주민공동시설	지하 1층	542.2949	헬스, 세탁실, 독서실, 맘스카페 등
작은도서관	지하 1층	208.1625	
경비실	지하 2층	60.0842	
지하주차장	지하 4층 ~ 지하 2층	28,981.0855	
MDF, 방재실	지하 1층	83.7414	
기계/전기실	지하 3층	465.3486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24.03.01. ~ 2027.03.01.
- 변경 : 2024.04.01. ~ 2027.07.31.

**2.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마.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3. 승인관련서류**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366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 김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내·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변경)

##### 1) 도로

도로 총괄표

(단위 : m, m<sup>2</sup>)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1	126	2,253	-	-	-	1	126	2,253	-	-	-
	변경	1	126	2,269	-	-	-	1	126	2,269	-	-	-
광 로	-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
중로	기정	1	126	2,253	-	-	-	1	126	2,253	-	-	-
	변경	1	126	2,269	-	-	-	1	126	2,269	-	-	-
소 로	-	-	-	-	-	-	-	-	-	-	-	-	-

주)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5	18	집산 도로	126	대로 1-1-9	소로 2-582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 (2023.06.01.)	
변경	중로	2	205	18	집산 도로	126	대로 1-1-9	소로 2-582	일반 도로	-	"	면적변경

주)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05호선	중로 2-20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li> <li>• 면적 변경</li> <li>- A = 2,253m<sup>2</sup> → 2,269m<sup>2</sup> (증 1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li> </ul>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6	녹지	경관녹지	김해시 불암동 106-1번지	4,061	감) 2	4,059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 (2023.06.01.)	

주)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6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및 지번변경</li> <li>- 위치 : 김해시 불암동 108번지 일원 → 불암동 106-1번지 일원</li> <li>- 면적 : 4,061m<sup>2</sup> → 4,059m<sup>2</sup> (감 2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분할 측량으로 인한 면적 및 지번 변경</li> </ul>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8	지내·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29,736	증) 45	29,781	-	

주)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8	지내·불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변경</li> <li>- 29,736m<sup>2</sup> → 29,781m<sup>2</sup> (증 4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적경계 분할 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li> </ul>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736	증) 45	29,78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211	증) 53	27,264	91.5	
자연녹지지역	2,525	감) 8	2,517	8.5	

#### 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736	증) 45	29,781	100.0	
주거용지	23,305	증) 31	23,336	78.4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	2,370	증) 16	2,386	8.0	
도로	2,370	증) 16	2,386	8.0	2개소
녹지용지	4,061	감) 2	4,059	13.6	경관녹지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변경)

##### 가) 도로

도로 총괄표

(단위 : m, m<sup>2</sup>)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2	1,886 (184)	64,413 (2,370)	1	1,760 (58)	62,160 (117)	1	126 (126)	2,253 (2,253)	-	-	-
	변경	2	1,886 (184)	64,429 (2,386)	1	1,760 (58)	62,160 (117)	1	126 (126)	2,269 (2,269)	-	-	-
광 로		-	-	-	-	-	-	-	-	-	-	-	-
대 로		1	1,760 (58)	62,160 (117)	1	1,760 (58)	62,160 (117)	-	-	-	-	-	-
중로	기정	1	126 (126)	2,253 (2,253)	-	-	-	1	126 (126)	2,253 (2,253)	-	-	-
	변경	1	126 (126)	2,269 (2,269)	-	-	-	1	126 (126)	2,269 (2,269)	-	-	-
소 로		-	-	-	-	-	-	-	-	-	-	-	-

주1) ( )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9	35~38 (2)	주간선 도로	1,760 (58)	광로 2-1-5	광로 2-1-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9-39호 (1999.03.04.)	
기정	중로	2	205	18 (18)	집산 도로	126 (126)	대로 1-1-9	소로 2-582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 (2023.06.01.)	
변경	중로	2	205	18 (18)	집산 도로	126 (126)	대로 1-1-9	소로 2-582	일반 도로	-	"	면적변경

주1) ( )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주2)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05호선	중로 2-20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li> <li>면적 변경 : A = 2,253㎡ → 2,269㎡ (증 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 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li> </ul>

2) 공간시설(변경)

가)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86	녹지	경관녹지	김해시 불암동 106-1번지	4,061	감) 2	4,059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 (2023.06.01.)	

주2) 기정은 김해시고시 제2023-155호(2023.06.01.)에 따름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6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및 지번변경</li> <li>- 위치 : 김해시 불암동 108번지 일원 → 불암동 106-1번지 일원</li> <li>- 면적 : 4,061㎡ → 4,059㎡ (감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 분할 측량으로 인한 면적 및 지번 변경</li> </ul>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 정	합 계		29,736	-	29,736	-
변 경	합 계		29,781	-	29,781	
기 정	-	A1	23,305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23,305	주거용지
변 경	-		23,336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23,336	주거용지
기 정	-	녹지	4,061	김해시 불암동 108번지 일원	4,061	경관녹지
변 경	-		4,059	김해시 불암동 106-1번지 일원	4,059	경관녹지
기 정	-	도로	2,370	-	2,370	
변 경	-		2,386	-	2,386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김해시 불암동 104번지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허용 용적률 : 239.8% 이하 - 「건축법」 제65조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적용
		높 이	· 29층 이하
		배 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의함
		형 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의함
		색 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의함

김해시 공고 제2024-1218호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계동 78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북부 우회도로(대로3-1-8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시행규모			비고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대로3-1-8호선	1,163	25~35	238.4	25	7,105	경고 제1999-39호 (1999.03.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한우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삼계중앙로 57, 501호

5. 사업시행기간 : 2019. 06. 28. ~ 2023. 12. 31.

6. 준 공 일 : 2023. 12. 07.

7.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 및 도로과(☎055-330-3834)

#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6조(등록) 및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김 해 시



1. 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4. 3. 14.

2. 신조 등록 공인내역 : 3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김 소 해 청 문 화 의 년 집	2.4 *2.4	흑인조	훈 민 정 음 체	신 조	아 동 청 소 년 과
김 해 시 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소 장 의 인	2.6 *2.6	흑인조	훈 민 정 음 체	신 조	아 동 청 소 년 과
김 해 시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센 터 소 장 인	2.4 *2.4	흑인조	훈 민 정 음 체	신 조	아 동 청 소 년 과

### 3. 신조 등록 인영부 : 3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등록	김청문 소 의 화 의	해년 집 2.4 *2.4	후인조	훈민 정음체	
등록	김청선 소 년 소 장 터 소 장 의	해상 담 복 시 지 인 2.6 *2.6	후인조	훈민 정음체	
등록	김학선 교 밖 청 소 년 지 터 장	시 원 인 2.4 *2.4	후인조	훈민 정음체	